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 363회 임시회 2018. 3. 22.(목)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03월 14일
  - 회부일자 : 2018년 03월 15일

###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18. 6. 1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O 위탁대상 :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 O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¹18. 6. 12. ~ '21. 6. 11.)
- O 위탁기관: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現, 위탁기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2015.6.12~2018.6.11)
- O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사 업 비 : 547백만원\* (도비 100%) \* 연도별 변동 가능
- O 위탁주요사무
  -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컨설팅

-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
-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

### 5. 검토의견

- O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조례」제4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의 제출되 었음.

#### O 종합의견

-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 센터의 주기능인 사회복지 기관과 기업 및 사회공헌을 원하는 단체 간 연계를 통해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활성화와
-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 센터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경험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등 고유 업무 수행능력 검정뿐만 아니라.

- 현재 센터에 입주에 있는 충북아동복지협회, 충북사회복지사 협회 등 15개 단체의 각 단체별 고유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불편사항 해결 능력과 각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능력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센터 운영과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 회의 활성화를 통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참고 1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현황

#### □ 일반현황

○ 건립연도 : 2006. 06. 15.

O 면 적 : 5,570㎡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등 15개 기관 입주)

○ 소 재 지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O 위탁현황

- 위탁기간: 1~4차(2006. 03. 13. ~ 2018. 06. 11.)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관리인원: 8명 (센터장1, 팀장 3, 사회복지사 3, 시설관리자 1)

## □ 건물현황

소재지		면적(m²)	전용면적(m²)	주요시설물
	총	5,549.71	3,861.71	지하 1층, 지상 5층
ᇣᄼ	지하	932.32	725.3	푸드뱅크창고, 직원식당, 기계실 등
청주시 호덕그	1층	826.83	446.49	복지기기전시관, UD체험관 등
흥덕구 공단로	2층	1,423.15	1,039.91	대회의실, 교육장, 분임토의실 등
공단도 87번지	3층	1,015.18	738.1	사회복지단체 사무국
아 진시	4층	904.65	627.57	사회복지단체 사무국
	5층	447.58	284.34	시각장애인도서관, 녹음실, 인쇄실

## □ 입주단체 현황 (15개 단체)

구분	단체명	대표	현직원수	임대(m²)	입주년도	임대료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9	155.25	2006년	무상사용 (센터목적사용)
지역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20	135.67	2006년	3,751,400
사회	미래복지개발원	표갑수	2	83.92	2006년	2,495,260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이원기	4	77.63	2006년	2,297,650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명식	13	247.77	2006년	7,333,830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김석부	7	99.36	2006년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부	최난나	5	77.63	2006년	무상사용
장애인	한국농아인협회 충북협회	이재만	3	42.12	2006년	(장애인복지법)
	충북수화통역센터	이재만	7	69.04	2006년	
	무지개도서관	박성주	9	173.18	2006년	

구분	단체명	대표	현직원수	임대(m²)	입주년도	임대료
	충북아동복지협회	이정순	1	51.75	2006년	1,531,770
OLE.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1	24.84	2007년	735,250
아동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정경진	14	74.52	2007년	충북도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노리마을	정경진	2	111.16	2010년	직접사용
노인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이재석	1	49.68	2006년	무상사용 (노인복지법)

## □ 2017년도 추진사업 및 주요실적

####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사 업 명	2017년 실적	비고
사회공헌 연계사업	4회 12,000 상당	
입주단체 네트워크 사업	4회 70명	
복지+진로 융합 프로그램	5회 114명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사 업 명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	비고
복지충북 발간	2회 4,000부	2회 4,000부	100	
충북복지넷 운영	상시운영	42,413명 접속	100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3,300명	3,329명	101	

#### 3)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사 업 명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	비고
	충북사회복지 토론회	1회 50명	1회 121명	100	
	충북사회복지기초통계	8회 1,200명	8회 2,173명	100	
충북	충북사회복지 Re-연구	8회 1,200명	8회 2,119명	100	
사회복지 조사연구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충북통계	6호	6호	100	
	충북사회복지현장&법제	28회 75,600명	54회 157,660명	192.9	
	충북복지 주간동향	48회 139,200명	48회135,565명	100	

사 업 명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	비고
충북지역사회보장지표 D/B 구축	104개 지표	242개 지표	233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4호	4호	100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 1회	연구 1회 (421개소 3,000명)	100	
충북사회복지시설 종사자 D/B 구축	2,200건	2,305건	104.7	
충북사회복지예산분석 보고서	-	발간 1회	100	
충북사회복지기관시설 현황 조사	-	1회	100	

## 4)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사 업 명	2017년 목표	4분기 실적	%	비고
찾아가는 사회복지 법정교육	42회 1,400명	44회 1,986명	105	
2017년 행정·회계 전문교육	6회 120명	9회 176명	150	
민관협력 법인관리 지침교육	5회 600명	5회 686명	100	
사회복지법인 전문컨설턴트양성	2회 40명	2회 113명	100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5회 100명	23회 355명	460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역량강화교육	3회 60명	3회 55명	100	
사회복지 실습	2회 2명	1회 2명	50	

## 5)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 · 컨설팅

사 업 명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	비고
	강사양성 2회 60명	강사양성 2회 65명	108	
	교육 30과정 1,200명	교육 54과정 1,909명	180	
충북사회복지 인권교육지원센터	인권컨텐츠 제작 1회	인권컨텐츠 제작 1회	100	
	뉴스레터제작 12회	뉴스레터제작 12회	100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 5회 613명	-	

## 6)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

사 업 명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	비고
시설대여	1,300건 40,000명	696건 30,835명	71.1	
시설관리	68호	68호	100	정기검사
시설개보수공사	-	10건 11,700천원	100	

## 참고 2 관 련 근 거

####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신설 2015. 3. 27>
-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 3.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4.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 5.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컨설팅
- 6.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
- 7.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